【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2- 414호】

2022년 국립보건연구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1 월 18 일

국 립 보 건 연 구 원 장

---

1. 채용예정인원 (1명)

채용분야	채용직급	지원코드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산업안전	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안전**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 (충북 오송)**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지원코드	채용직급	담당 업무
안전	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연구실 포함 전체 사업장 대상)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 장치 · 보호구의 선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627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426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873호)

4.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2022. 12. 28. 예정)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	선발예정인원
안전	일반임기제 공업7급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	**1명**

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연구실 포함 전체 사업장 대상)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 장치 · 보호구의 선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필요역량	○ (공통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기획력, 추진력, 문제해결력, 협상력, 의사전달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필요지식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지식 ○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 지침에 관한 지식 ○ 시설, 연구실 등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필요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경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	
우대요건	○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중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근무경력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관련분야 자격증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전기(공사)기술사, 위험물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사·기능장,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2급, 3급)	

<공통>

- 응시자격요건(자격·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1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2.12.2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11.28.)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자격요건>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최대 40개월, 근무개월수에 따라 차등우대)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은 필수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공업7급)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전기(공사)기술사, 위험물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사·기능장,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2급, 3급)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4. 우대 요건 : [붙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아래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11.18.(금) ~'22.11.28.(월)	'22.11.24.(목) ~11.28.(월)	'22.12.16.(금) 예정 ※ 면접 일정 등 공고	'22.12.28.(수) 예정	'23.01.12.(목)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 2022. 11. 24.(목) ~ 11. 28.(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2동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 문의전화 : 043-719-8039(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불합격자 중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이메일(jhy0128@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하여 드립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 기관에서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 2. 12. ~ 3. 12.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필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필수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3매로 작성 **(총 4매 이내)**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6.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되는 자격증 및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제출
7. 주민등록 초본 1부 필수	○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7호)필수**	○ 자필 서명 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2년 1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구 분	2022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호	62,019	29,762

-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043-719-8039)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제 출 서 류 목 록

성 명	응시직급	응시코드
	공업 7급	*안전*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출서류명	제출유무	
		제출	미제출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6	직무분야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제출한 항목에 대해 제출유무 여부 란에 "O" 표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원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본인은 국립보건연구원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자격 요건(해당분야 ☑표시) □자격①, □자격②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원 서(부본) 응시자격 요건(해당분야 ☑표시) □자격①, □자격②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분야 별 자격요건 중 반드시 택1

응시분야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공업7급 (산업안전)	**자격①**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②** :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최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코드	안전	응시자격요건	자격①② 중 택1	성명	0 0 0

나. 응시자격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과)	'00.00.00.~ '00.00.00	과장(4급)	구체적으로 작성	주 OO시간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과)	'00.00.00.~ '00.00.00	과장(4급)	구체적으로 작성	주 OO시간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우대요건 자격증 명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코드** : 응시코드 '안전'으로 기재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1**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자격증·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예시) 자격①(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응시자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7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3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주OO시간)으로 표시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을 근무한 경우, 2년 경력 인정 →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응시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주OO시간)으로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을 근무한 경우, 2년 경력 인정 →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관련 분야 이외의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정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0 0 0*	응시코드	*안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2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 요약)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5,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7호>　　※반드시 자필 서명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후 메일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 )

(우편번호 : 28159)

받는 사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2동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연락처 : 043-719-8039

[국립보건연구원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